

마르크스주의 연구

특집

플랫폼자본주의 시대의 도시공유지와 기본소득

마르크스의 도시공유지 및 도시지대 개념과 플랫폼시티 개발이익의 공유*

곽노완** · 권정임***

마르크스는 『자본』에서 자본주의를 분석할 때 수탈과 착취라는 두 가지 개념을 통해 2중의 빼앗김을 입체적으로 보여주면서도, 착취에 비중을 두는 편이다. 그리고 대안체제인 코뮌주의를 비노동자를 포함한 전체 사회성원의 연합으로 서술하기도 하고, 때로는 노동자들(만)의 연합으로 서술하기도 한다. 이러한 양가적인 마르크스에게서 한 측면인 착취 중심 프레임과 ‘노동물신주의’, 생산자 연합 개념 등이 현실사회주의에서 특권화되면서, ‘수탈’의 개념과 자유로운 ‘사람들의 연합’이라는 개념은 불구화되었다. 그리고 마르크스한테 나타나는 공유화와 국유화의 양가성 중에서, 국유화가 공유화를 압살하면서 특권화되었다. 이 글은 공유지 인클로저와 도시지대에 대한 마르크스의 개념과 문제들을 재구성하여, 플랫폼자본주의의 새로운 공간으로 진화하는 도시, 곧 스마트시티 내지 플랫폼시티 공유지의 인클로저를 분석하고 이의 대안으로서 국내에서 도시개발이익을 공유화하여 기본소득을 확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도시공유지의 인클로저는 마르크스의 개념으로는 자본주의적인 수탈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플랫폼시티나 스마트시티 배당은 오늘날의 플랫폼자본주의에서의 도시공유지 수탈을 기본소득으로 전환하는 방안이다.

주요 용어: 플랫폼시티, 스마트시티, 도시공유지, 도시지대, 수탈, 기본소득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7S1A3A2066659).

** 한신대학교 산학협력교수, kwascks79@naver.com

*** 한신대학교 연구교수, blauerhimmel1@daum.net

1. 들어가며: 기본소득 논의의 부상과 마르크스주의

코로나에 대응해 경기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이 지급되고, 전국적으로 가구 별로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이후, 기본소득 도입을 둘러싸고 여야 정치권에서까지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국내에서 진보와 보수 정치권을 가리지 않고 기본소득이 혁신파들의 대안으로 급부상한 것이다. 10년 전 국내에서 기본소득 국제학술대회가 개최될 때만 해도 진보 학계와 운동권 좌파 내부의 논쟁주제에 머물렀던 기본소득이 연이어 TV 토론 주제로 떠오르면서, 이제 기본소득은 국민 모두의 관심사로 부상하였다. 당장 전국적인 차원에서 기본소득이 부분적으로나마 실현될 가능성이 커졌고, 적은 규모로나마 이주자를 포함한 국내 거주자들이 개별적으로 기본소득을 받기 시작할 날도 멀지 않아 보인다.

마르크스주의를 포함한 급진 좌파 안에서도 대체로 혁신파는 기본소득을 지지하고, 구좌파 일부는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형국이다. 어찌 보면 좌우를 가로질러 혁신파는 기본소득을 지지하고, 보수파는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좌파 안에서조차도 보수파가 있고, 혁신파가 있다고 할 수도 있다. 곧 체제전환이나 정책전환을 목표로 하는 마르크스주의자와 사민주의자일지라도, 현실사회주의 및 서구 사민주의의 국유화 내지 공공성 및 노동연계 복지 프레임에 고수하는 한, 보수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반해 새로운 플랫폼자본주의 시대의 대안으로 부상하는, 공유자산에 대한 사회성원 모두의 평등한 권리와 기본소득의 프레임을 수용하는 사람들은 좌우를 불문하고 혁신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기본소득은 마르크스주의의 전유물이 아니라, 좌우를 막론한 혁신파 모두의 새로운 대안사회 프레임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지구적으로 현대 기본소득운동의 주축을 이루는 지구기본소득네트워크의 초창기 주역들인 판 파레이스(Van Parijs)나 스탠딩(Standing), 하워드(Howard) 등은 마르크스주의자 내지 급진 좌파에 속하는 연구자들이다. 이들 외에도 해외에서 존 로머(J. Roemer), 에릭 올린 라이트(E. O. Wright), 칼 라이터(K. Reitter), 알렉스 켈리니코스(A. Callinicos), 로날드 블라슈케(R. Blaschke) 등 마르크스주의 입장에서 기본소득을 옹호하는 사람들도 있고, 최근에는 티모 다

움(T. Daum), 요르그 라이너스(J. Reiners) 등 젊은 마르크스주의 연구자들도 속속 기본소득연구의 주역으로 참여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2000년대 중반 이래 마르크스주의 혁신파 연구자들이 기본소득 연구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그런데 기본소득에 가장 격하게 반대하는 측도 마르크스주의 보수파와 사민주의자들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독일의 경우 보수당과 자민당, 녹색당, 좌파당 안에는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좌파당 내 마르크스주의자 중에 극심한 반대파가 있으며 사민당 안에는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사람이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국내에서도 마르크스주의 보수파 및 사민주의 연구자와 정치세력은 기본소득에 가장 적대적이거나 미온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처럼 마르크스 연구자와 좌파 정치세력이 기본소득의 선도그룹과 적대그룹으로 모순적으로 양극화되는 상황은, 마르크스 자신의 모순적 양가성(Ambivalenz)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공유자원 내지 공유지(Commons)에 대한 평등한 권리로써 기본소득과 연관해서 마르크스의 양가성은 공유(共有)와 공공(公共)의 혼동, ‘수탈(Expropriation)+착취(Exploitation) 융합프레임’에서 도출되는 자유로운 ‘사람들의 연합(Assoziation der Menschen)’과 ‘착취 중심 프레임’에 도출되는 ‘자유로운 생산자 연합(Assoziation der Produzenten)’의 혼용에서 비롯한다고 할 수 있다. 마르크스는 『자본』에서 자본주의를 분석하고 이론화하면서 수탈과 착취라는 두 가지 개념을 통해 2중의 빼앗김을 입체적으로 보여주면서도, 착취에 비중을 두는 편이다. 그리고 대안체제인 코뮌주의를 비노동자를 포함한 전체 사회성원의 연합으로 서술하기도 하고, 때로는 노동자들(만)의 연합으로 서술하기도 한다.

이러한 양가적 마르크스에게서 한 측면인 착취 중심 프레임과 ‘노동물신주의(Arbeitsfetischismus)’(Reiners, 2019: 79 이하), 생산자 연합 개념이 현실사회주의에서 특권화되면서, ‘수탈’의 개념과 자유로운 ‘사람들의 연합’이라는 개념은 불구화되었다. 그리고 마르크스한테 나타나는 공유화와 국유화의 양가성 중에서, 국유화가 공유화를 압살하면서 특권화되었다. 이러한 현실사회주의 프레임에 갖고 있는 마르크스 보수파 연구자나 정치세력에게는, 모두의 권리인 기본소득이 반(反)마르크스적인 기획으로 보일 것이다.

마르크스주의 입장에서 금민과 라이너스는 마르크스적인 기본소득을 위해서는 임금노동자의 특권을 지향하는 ‘노동주의’(금민, 2020: 116) 내지 ‘노동물신주의’ 패러다임을 넘어서야 한다고 본다(Reiners, 2019: 79 이하). 곧 마르크스주의 내에서 노동주의 내지 노동물신주의 프레임을 가진 논자들이 기본소득에 반대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필자도 이들의 견해에 공감하며, 더 나아가 공유권자인 사회성원 모두의 민주적 권리와 평등한 배당권 대신에 자본의 반대편으로 간주되는 국가 내지 공공성을 옹호하여 통치권자의 독재와 공유지 사유화를 초래한 ‘국가물신주의’가 기본소득에 반대하는 또 하나의 주요 프레임이라고 본다. 곧 필자가 보기에 ‘노동물신주의’와 ‘국가주의’는 마르크스주의 연구자 및 정치세력 일부가 기본소득을 격하게 반대하는 두 가지 핵심 축이자, 현실사회주의 실패의 결정적인 요인이다. 국내에서도 마르크스주의 보수파가 기본소득에 반대하는 가장 큰 근거는 이 두 가지 프레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시민주의도 이러한 두 가지 프레임을 고수하는 점에서 마르크스주의 보수파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시민주의를 신봉자가 많은 정의당과 문재인 정부 및 민주당 다수파에서는 기본소득의 수용이 어렵거나 지체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마르크스 양가성에서 새로운 혁신을 추구하는 연구자나 정치세력에게는 기본소득이 역사의 뒤꼍으로 밀려난 마르크스주의를 새 시대의 희망으로 재생시키고 대중화할 수 있는 기회일 것이다.

더구나 구글, 아마존,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자본이 기존의 자본을 넘어 새로이 주도적인 자본그룹으로 부상하고, 저커버그 등 플랫폼자본가마저 기본소득의 도입을 새 시대의 과제로 제시하는 역설적인 현 상황에서 마르크스주의는 더욱 더 정당하고 지속가능한 기본소득의 모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¹⁾ 그런데 플랫폼자본은 어떻게 자본주의의 선두 자본으로 부상하게 되었을까? 플랫폼자본은 플랫폼을 통해 새로운 모두의 공유자원인 빅데이터와 네트워크 효과를 인클로저(수탈)하여 공룡기업으로 급부상하게 되었다. 그리고 플랫폼자본 외에도 새로운 플랫폼공유지를 인클로저(수탈)하는 자본가와 유산자 그룹이

1) 일반적인 마르크스주의 기본소득 논쟁과 모델에 대해서는 광노완(2017d)을 참조하라. 여기서 광노완은 시장사회주의를 넘어서서 공유사회주의를 통해 마르크스주의 기본소득모델을 제시하고 있다(앞의 글: 134 이하).

생겨나고 있다. 마르크스의 정치경제학비판 체계에서 이러한 공유지 인클로저를 분석하는 틀은 제일 먼저 시초축적 및 수탈 개념에서 나타난다.

이 글은 공유지 인클로저와 도시시대에 대한 마르크스의 개념과 문제들을 재구성하여, 플랫폼자본주의의 새로운 공간으로 진화하는 도시, 곧 스마트시티 내지 플랫폼시티 공유지의 인클로저를 분석하고 이의 대안으로서 국내에서 도시개발이익을 공유화하는 기본소득 확충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현대 마르크스의 시초축적론과 공유지 인클로저 개념을 재구성하여 플랫폼자본의 공유지 인클로저를 분석해 보자.

2. 플랫폼 공유지 인클로저와 마르크스의 시초축적 및 공유지 인클로저 개념

2020년 6월 22일 현재 지구적으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알리바바 등 플랫폼기업이 주식시가총액 순위 6위까지를 차지하고 있다.²⁾ 그리고 국내에서는 네이버, 카카오가 각각 주가총액 순위 4위와 9위로 급성장하여 금융자본이 부상했던 신자유주의의 시대의 자본 위계를 뒤집으면서, 플랫폼자본주의라는 새로운 자본주의 시대를 열어젖혔다.³⁾

전통적인 기업 내 임금노동자에 대한 착취만으로는 이러한 플랫폼기업의 급성장을 설명할 수 없을 것이다. 플랫폼기업의 급성장은, 기업 내 임금노동자에 대한 착취를 넘어서 기업 외부의 재화/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모두의 연결을 통해 진화하는 디지털 플랫폼 등 원리적으로 공유지의 수익 대부분을 사적으로 인클로저한 데 기인한다. 그러면 자본주의 임금노동의 착취에 주목한 것으로 여겨진 마르크스의 잉여가치론은 시대적 유효성을 상실한 것일까? 그렇지 않다. 유효성을 상실한 것은 마르크스의 잉여가치론이 아니라, 자본주의적인 빼앗음의 공간을 직접적인 임금노동에 대한 착취 영역만으로 한정하는 마르

2) <https://www.dogsofthedow.com/largest-companies-by-market-cap.htm> 참조.

3) https://finance.naver.com/sise/sise_market_sum.nhn 참조.

크스주의 보수파의 협소한 노동물신주의일 뿐이다. 오히려 마르크스는 『자본』에서 자본주의적인 빼앗음의 영역을, 임금노동에 대한 착취만이 아니라 공유지에 대한 인클로저 및 중소자본에 대한 독점자본의 빼앗음과 주택에 대한 도시지대의 빼앗음을 개념화한 수탈의 시공간으로까지 확장함으로써 오늘날 빅데이터를 포함한 플랫폼 공유지를 포함한 공유지 전체의 인클로저(수탈)를 파악할 수 있는 이론적 틀을 제시하고 있다.

디지털 플랫폼기업이 빅데이터를 포함한 플랫폼 공유지를 인클로저하여 얻는 이윤에 대해서, 최철웅은 마르크스주의 보수파의 입장에서 플랫폼기업의 알고리즘을 설계한 숙련노동자들이 생산한 잉여가치에서 유래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데서 생산된 잉여가치의 일부를 임대료나 수수료로 수취한 것이라 본다(최철웅, 2017: 66 이하).⁴⁾ 그리고 자율주의 입장에서는 플랫폼기업의 이윤을 육체노동에 기반한 마르크스 가치론의 붕괴 근거로 제시하기도 한다(최철웅, 앞의 곳에서 재인용).

그러나 플랫폼기업의 이윤 원천을 플랫폼알고리즘을 설계노동으로 돌리거나 아니면 다른 데서 생산된 잉여가치의 일부를 임대료나 수수료로 수취한 것으로 보는 최철웅의 견해는 플랫폼자본의 관리직이나 일반노동자들은 잉여가치를 생산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셈인데, 잉여가치와 이윤의 생산을 사물적인 형태가 아니라 자본에 의한 생산 여부로 판단하는 마르크스 관점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마르크스의 가치론을 육체노동에만 연관시켜 이해하는 자율주의의 견해도, 자본에 고용된 한에서 교사의 노동처럼 정신노동도 생산적 노동으로 간주하는 마르크스의 주장을 곡해한 것이다(곽노완, 2020: 108~109 참조).

이러한 디지털플랫폼의 이윤 배당권에 대한 마르크스주의 입장에서의 최근

4) 최철웅은 플랫폼에 데이터가 축적되는 데이터가 자연원료와 같이 잉여가치와 이윤을 낳지 않는다고 보는 점에서는 마르크스주의 보수파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런데, 기본소득을 주장한다는 점에서는 마르크스주의 혁신파와 동일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최철웅, 2017: 73). 하지만 데이터가 잉여가치와 이윤을 낳지 않는다면 데이터의 시인들이, 그의 주장대로 데이터를 전유하고 플랫폼기업의 수익을 기본소득으로 공유하자고 어떻게 주장할 수 있는 지 논리적인 연결이 불분명하다.

주장에 대해서는 금민의 『모두의 몫을 모두에게』 3장 「플랫폼 자본주의의 빼앗긴 빅데이터」가 도움이 될 것이다(금민, 2020: 127~182). 여기서 금민은 플랫폼 알고리즘을 마르크스의 “고정자본으로서의 일반지성”으로 보아, 플랫폼 알고리즘을 “살아 있는 노동으로서 대중지성(분산지성)”으로 보는 자율주의자들의 견해를 비판한다(앞의 책: 159~160). 그리고 그는 데이터를 노동이 아니라 기록물로 또 사회적 공유자산(그의 용어로는 공통부)으로 본다(앞의 책: 162~163). 그는 이런 관점에서 데이터를 개별 노동으로 간주하여 기본소득 대신에 개별적으로 배당받는 나노 페이먼트(nano payment)를 주장하는 래니어(Lanier)의 견해를 비판한다(앞의 책: 163~164).

디지털 플랫폼자본은 주로 플랫폼에 가입한 상품/서비스 공급자와 이용자의 활동의 결과로 생산된 빅데이터를 통해 막대한 초과이윤을 얻는다. 금민이 지적하듯이 빅데이터는 사회적 공유자산이기에 플랫폼자본이 빅데이터의 활용, 임대, 판매를 통해 얻는 막대한 초과이익은 공유지를 인클로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마르크스의 개념들에서 공유지 인클로저의 주요 형태로 등장하는 시초축적(ursprüngliche Akkumulation) 개념은 플랫폼자본에 의한 플랫폼 빅데이터 공유지 인클로저의 분석에서도 강력한 이론적 도구이다.

그런데 이 글에서는 도시공유지의 인클로저에 초점을 맞춰 시초축적과의 연관성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흔히 마르크스가 만들어낸 것으로 오해하는 시초축적이라는 용어는 원래는 애덤 스미스(A. Smith)의 용어를 차용한 것이다. 그래서 『자본』 1권 24장의 제목이 「**이른바** 시초축적(Die sogenannte ursprüngliche Akkumulation)」으로 붙여진 것이다. 애덤 스미스에 따라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생산양식의 결과가 아니라 출발점을 이루는 축적을 시초축적이라고 부른다(Marx, 1867: 741). 그러나 ‘이른바’라는 부사가 함의하듯이 마르크스는 ‘시초축적’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스미스, 티어스(Thiers) 등 당시 정치경제학자들의 설명과는 거리를 둔다. 그들은 시초축적의 원인을 근면하고 현명하며 절약하는 엘리트층의 존재에서 찾는다(Marx, 1867: 741 이하; Smith, 1776: 332). 따라서 스미스는 시초축적이 조용히 점진적으로 진행되었다고 본다(Smith, 앞의 곳). 그리고 스미스는 시초축적이 분업의 전제조건이라고 본다(Marx, 1861~1863

(MEGA III.3.4): 1402 이하]. 이에 비해 마르크스는 시초축적을, 생산수단에 속하지도 않으면서 동시에 생산수단으로부터 분리되었다는 이중의 의미에서 자유로운 임금노동자를 산출하며 또한 사회적인 생활수단과 생산수단을 자본으로 전환시키는 폭력적인 수탈과정이었다고 본다(Marx, 1894: 742~743). 곧 시초축적은 농촌공유지에 대해 대지주계급의 대대적인 사적인 인클로저 내지 농민에 대한 수탈이 진행되는 과정이었다는 것이다(앞의 책: 743~744). 따라서 시초축적은 스미스나 투르고가 생각하듯이 사물적인 분업의 조건이라기보다는 지주-자본가-임금노동자로 구성된 자본주의적인 생산양식을 낳는 조건이라고 본다(MEGA III.3.4: 1403~1404).

그런데 시초축적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공유지 인클로저가 단지 자본주의 이전 시기에 그것도 농촌공유지에 한정된 것일까? 시초축적이야 당연히 자본주의 이전 단계 내지 비자본주의적 공유지에 대한 인클로저 내지 생산자들에 대한 수탈 과정이었지만, 자본주의가 확립된 단계에서 그리고 도시에서도 공유지 인클로저는 지속적으로 확대된다. 마르크스 자신도 도시 토지를 포함해서 토지 전체가 누구의 소유도 아니라는 점(Marx, 1894: 784), 곧 공유지(Communs)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곧 토지에 대해 소유권을 설정해야만 한다면 미래 세대를 포함한 사회성원 모두의 것으로 설정할 수밖에 없음을 주장하는 셈이다.⁵⁾ 그리고 만약 토지 일부의 사적인 소유를 인정할 경우에도, 도시토

5) 금민은 페인(Paine)의 토지의 원초적 공유권과 가치화 이후 원초적 공유권의 자연적 공동소유권으로의 전환이라는 주장을 수용하여 빅데이터에 대한 공유권을 주장한다. 그런데, 마르크스가 사회진화의 성과인 도시개발이익과 같은 인공공유지의 인클로저를 비판하고 공유를 정당화함에 비해, 페인에게는 인공적 소유에 대한 공동소유 개념이 없다. 금민은 인공적 소유인 빅데이터의 공동소유를 페인의 자연적 소유권을 통해 정당화하는데, 이는 타당하지 않다. 이는 데이터가 플랫폼자본에 의해 빅데이터로 가치화되기 이전에 데이터에 가치를 매기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라고 보는 데서 기인한다(금민, 2020: 171). 우선 데이터를 빅데이터와 달리, 플랫폼 알고리즘에 의해 가치화되기 이전의 것으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 데이터도 빅데이터와 마찬가지로 이미 동일한 알고리즘에 의해 수집된 것이며, 빅데이터가 추가의 알고리즘을 거쳐 데이터를 더 가공한 것도 아니다. 개별데이터도 빅데이터처럼 가치화될 수 있다. 따라서 데이터를 가치화 이전의 것으로 보아 원초적 공유권과 연관시키고 이후 빅데이터로 가공되면서 자연적 소유권으로서 공동

지는 인공적인 도시공유지라 할 수 있는 사회진보의 성과가 축적되는 곳이다. 마르크스는 그 도시공유지를 도시의 지주가 가로챈다고 본다(Marx, 1894: 781). 이는 도시개발이익이 사회진보의 결과 생산된 도시공유지이며, 이것이 토지소유주에 의해 인클로저된다는 주장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도시공유지를 수탈당하는 사람은 임금노동자에 한정되지 않는 도시의 모든 거주자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도시의 주요 거주자를 임금노동자로 보는 경향이 있다(Marx, 1867: 688~691; Engels, 1872: 226~227). 이 점은 현대의 도시공유지를 수탈당하는 도시거주자의 다양한 계급 구성을 감안할 때 미흡한 부분이다. 도시공유지를 수탈당하는 무산자는 임금노동자 외에 자영업자, 플랫폼노동자, 학생, 노령자 등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⁶⁾

도시개발이익과 시초축적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지리학자 하비(Harvey)가 역사지리유물론의 관점에서 정식화한 바 있다. 그는 “마르크스가 꼽았던 시초축적의 모든 특징들은 지금까지도 자본주의의 역사적 지리학 안에 강력하게 남아”, “마르크스가 강조했던 시초축적의 몇 가지 메커니즘들은 미세한 조정을 거쳐 전보다 더욱 강력한 기능을 수행한다”고 하면서 이를 ‘강탈에 의한 축적(accumulation by dispossession)’이라고 명명한다(Harvey, 2003: 145, 147). 그에게 도시 내 창조적 파괴와 건조환경 건설을 통한 도시의 개발(Harvey, 2012: 55 이하)은 이익집단에 의한 도시공유지 인클로저 과정으로서(앞의 책: 144) 이러한 ‘강탈에 의한 축적’의 한 형태라 할 수 있다. 이처럼 도시공유지 인클로저를 포함한 공유지 인클로저를 시초축적의 단계만이 아니라 자본주의 전 역사를 통해 관찰되는 과정으로 보는 하비의 관점은, 오늘날 플랫폼자본에 의한 빅데이터 인클로저 및 도시재개발을 통한 정부 특권층/자본가/도시부동산소유자의 도시공유지 인클로저의 지속적인 확대재생산을 분석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소유권이 성립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 6) 이에 대해서는 광노완(2017b: 39~30 참조). 마르크스주의 연구자 하워드(Howard)도 자연공유지와 사회적으로 전승된 자본공유지가 노동자만이 아니라 모든 시민의 것이라고 본다(Howard, 2005: 116). 그러나 자연공유지와 역사적인 공유지 외에 당대에 모두의 공동활동으로 만들어지는 공유지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다. 이는 아직 플랫폼자본주의가 일반화되기 이전이라는 사정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현대 자본주의에서 공유지 인클로저가 지속적으로 반복된다고 보는 것은 날카로운 통찰이지만, 이를 마르크스 시초축적의 지속적인 반복으로 보고 또한 ‘강탈에 의한 축적’으로 개념화하는 것은 김공회(2006)의 비판대로 문제가 있다. 우선, 마르크스가 아담 스미스로부터 차용한 ‘시초축적’ 개념은, 대토지소유자의 공유지 인클로저만이 아니라 생산수단으로부터 생산자(농민)를 분리시키고 나아가 이들을 자본주의 임금노동자로의 전환을 함의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공유지의 인클로저만으로 시초축적과 동일한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일면적이다. 나아가, ‘강탈에 의한 축적’ 개념을 자본주의 외부의 지속적인 창출 및 자본에 의한 이 외부의 ‘강탈’ 과정으로 보는 것도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이렇게 본다면 자본주의에서 새로운 공유지의 창출 및 이를 전유하는 과정을 자본주의적인 착취 내지 수탈의 개념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비자본주의적인 폭력적 강탈로 치부하게 되면서 자본주의에서의 비자본주의적인 강탈의 일반화라는 설명이 필요 없는 몰개념적인 수사에 머물게 되기 때문이다(김공회, 2006: 145~158). 오히려 빅데이터 및 도시공유지의 생산과 이에 대한 특정 이익집단의 인클로저 등은 철저히 자본주의적인 인클로저로 설명될 필요가 있다. 이미 자본주의적인 빼앗음을 ‘자본주의적인 임금노동 착취’와 ‘자본주의적인 수탈’이라는 이중의 개념으로 설명한 마르크스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 채, 하비는 안이한 수사로 설명을 대신하고 있는 셈이다. 마르크스의 개념에 따를 때, 도시공유지 인클로저는 자본주의적인 수탈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수탈은 시초축적과정에서 임금노동자를 생산하는 농촌공유지 수탈(시초축적)(Marx, 1867: 741~788), 자본주의 축적 과정에서의 독점자본에 의한 중소자본 수탈(자본의 집중) (Marx, 1867: 640~676), 금융자본과 토지소유주에 의한 생산자본 수탈 (Marx, 1894: 350~626, 627~780), 그리고 자본에 의한 도시지대 수탈 등이 있다(Marx, 1894: 781~789). 플랫폼 자본주의에서 공유지 인클로저는 이 중에서 시초축적과 유사한 농촌공유지 수탈과 비슷한 측면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자본의 축적 및 집중 과정에서 도시공유지 내지 도시지대 수탈과 비슷한 측면이 있다. 플랫폼자본의 빅데이터 인클로저는 인공공유지의 수탈이라는 점에서 “사회의 진보를 가로챈다”(Marx, 1894: 781) 도시공유지 수탈 내지 도시지대(마르크스의 용어로는 건축지지대)의 수탈과 비슷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론적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비는, 자본축적과정에서 필수적인 도시공유지의 지속적인 생산 및 이에 대한 국가와 사적인 이익집단의 인클로저를 강조하는 점에서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고 있다. 이는 자본주의적인 빼앗음을 임금노동에 대한 착취의 시공간으로 한정하는 경향이 있는 마르크스주의 보수파의 프레임을 넘어서서, 현대 자본축적과정에서 도시공유지의 공공화, 사유화라는 이중의 인클로저를 입체적으로 드러내는 이론적 기여이다(Harvey, 2012: 140~146). 특히 사적인 자본이나 개인에 의한 도시공유지 인클로저만이 아니라 국가나 도시정부 등 공공기관에 의한 도시공유지의 인클로저까지도 도시공유지의 비극으로 보고, 공공화와 사유화 모두를 넘어서서 대도시라는 공유지(변역본에서는 공유재)를 사용할 권리가 이 공유지를 생산한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야 한다(Harvey, 2012: 166)는 주장은, 공공재가 공적·국가적 이익집단에 의해 인클로저된다는 지적(앞의 책: 136)과 함께 마르크스주의 보수파의 국가물신주의를 넘어서 공유지에 대한 진보의 새로운 대안의 문턱으로 안내해 주는 길잡이가 될 수도 있다.

3. 플랫폼시티 개발이익의 인클로저와 마르크스의 도시지대론

플랫폼은 원래 기차 승강장처럼 무언가를 타고 내리는 승강장이나 무대 내지 연단 등을 뜻했다. 그런데 이제는 사람들의 연결과 접속이 이루어지는 기본 골격이나 인프라 등 공통의 기반 역할을 하는 다양한 것들을 포괄하는 뜻으로 쓰인다. 다양한 플랫폼은 공통의 기반이나 골격으로서 본연의 역할도 하지만, 본연의 역할 외에 파생 상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기반이기도 하다.

도시 자체 그중에서도 특히 공공기관, 지하철역, 기차역, 보행자전용길, 도로, 도시의 공중(하늘) 등 도시의 공유공간도 일종의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만물인터넷을 통해 진화하는 플랫폼공유지를 갖는 오늘날의 도시는 스마트시티⁷⁾ 내지 플랫폼시티라고 할 수 있다. 플랫폼시티란 용인 플랫폼시티에서

7) 스마트시티란 만물인터넷이 융합된 수신과 발신이 자유로운 지능화된 도시이자,

보듯이, 스마트시티에 GTX, 지하철, 고속도로가 교차하는 교통요충지 및 첨단 산업, 상업, 주거, 문화, 복지가 가미된 온·오프 공간에서 초연결의 복합신도시로 아직 일반화된 도시 개념은 아니지만 스마트시티에 고밀도개발이 추가된 도시 개념으로 점점 더 일반화되는 도시기획이다. 이 플랫폼시티의 생산자는 누구인지, 그리고 새로운 교통, 건축, 만물인터넷의 개발이 활성화되는 플랫폼시티의 개발이익은 얼마나 크며 또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등에 대해서 앞서 살펴본 마르크스적인 공유지 인클로저 및 건축지 지대 개념은 유용한 분석수단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한국 국토부와 각 지자체는 규제가 없는 스마트시티 시범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부산의 에코델타시티, 세종시의 스마트시티 국가산업단지 등은 이미 닳을 올린 상태이고, 인천을 포함해 전국 다수의 도시와 4차 산업을 추진하는 기업들이 정부의 스마트시티 시범사업에 공모 준비 중이다. 스마트시티 구역은 만물인터넷,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환경 및 에너지 최적화를 위한 리빙랩(living lab) 등 4차산업이 집약된 공간으로 개발되면서, 부동산가격이 폭등하고 있다. 곧 정부지원금을 통한 개발되는 스마트시티라는 공유지가 자본의 이권으로, 그리고 정부특권층, 부동산 소유자 및 투기꾼들의 이익으로 인클로저 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개발을 멈추라’, ‘기존의 도시공동체를 보존하라’는 전통적인 진보의 목소리는 스스로 낡은 보수파로 전락했음을 고백하는 것이다. 마르크스주의 지리학자인 하비의 경우, 다극적 다양성을 옹호하는 티뷰(Tiebout) 가설⁸⁾의

4차 산업혁명의 플랫폼이기도 하며, 사람 중심의 민주적인 도시이다. 이는 모든 도시거주자들이 데이터의 생산자이자 소비자인 프로슈머(prosumer)로서 연결되어 살아가는 새로운 도시라고 할 수 있다(곽노완, 2017: 1122~1123 참조). 이러한 스마트시티는 공동역량을 공유하는 플랫폼, 인간 삶의 플랫폼이기도 하다(이민화·윤예지, 2019: 98).

- 8) 찰스 티뷰는 여러 자치구역이 지역 특성에 맞는 지방세를 부과하고 각기 다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델을 제시했다. 그러면 주민들은 이사를 통해 자신들이 선호하는 지방세와 공공서비스를 선택할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가난한 사람들은 이사비용이 없어 선택권을 갖지 못하여서, 공공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가난한 자치구에 머물고, 부자들은 부동산 가격이 비싸더라도 공공서비스의 질이 우수한 자치구로 이사를 가서 혜택을 누리는 역설적인 결과가 초래되었다. 하비는

함정에 빠지는 오스트롬(Ostrom) 등 소규모 공동체를 옹호하는 일부 급진파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Harvey, 2012: 150~152). 이는 ‘국가=자본’, ‘지방공동체=반자본’이라는 소규모 공동체주의의 프레임이 자본과 부자들의 특권에 대한 도전이 될 수 없고, 오히려 보조 역할을 조장한다는 주장이기도 하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해서, 하비는 도시공유재를 되찾자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1) 국가를 향해서는 공공재를 정치권력이 인클로저하지 않고 공공목적에 부합하게 공급하라고 요구하고, 2) 주민이 스스로 비상품적 공유재와 환경 공유재의 질을 높이고 공공재를 영유하자고 제안한다(Harvey, 2012: 159).

공유재를 되찾자는 그의 급진적 주장이, 국가에 공공재를 잘 공급하라는 요구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비상품적 공유재의 질을 높이고 영유하자는 추상적인 요구로 축소되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예를 들어 지금 스마트시티나 플랫폼시티가 초래하는 특권층과 자본 및 부동산부자들의 도시공유지 인클로저에 대해 하비의 요구가 얼마나 대안적인 힘이 될 수 있을지 회의스럽다. 이는 전통적인 급진파의 한계를 넘으려는 하비의 시도가 스스로 낡은 프레임에 매여 다시 축소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스마트시티나 플랫폼시티는 자본주의나 아니냐를 떠나 새로운 시대의 중요한 경제/정치/생태적 기폭제이고 도시 차원을 넘어 국가 차원에서도 미래로 가는 지름길이다.

스마트시티나 플랫폼시티에 대한 자본이나 특권층 및 부동산 부자들의 요구는 스마트시티나 플랫폼시티의 개발이익을 더 많이 사유화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다. 개발이 아닌 보존이나 자율적인 노력을 요구하기보다는 그 사업을 위해 모두의 공유자산인 조세가 대대적으로 투입되는 만큼, 이에 대한 진보의 대안은 하비처럼 스마트시티나 플랫폼시티라는 공유지를 정부나 지자체가 공공목적에 맞게 공급하고 모두가 비상품적으로 생산하며 평등하게 이용하자는 데 머물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도시개발의 재원을 공공예산이 아니라 모두의 재산인 공유기금으로 전환하고 대신 개발이익을 사회성원 모두가 평등하게 누리자는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이는 도시공유지 개발이익 중 일정 비율

그런 점에서 분권적 자치가 급진적으로 보이지만 무력한 대안이라고 본다(Harvey, 2012: 151~152).

을 모두가 기본소득으로 배당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르크스의 도시지대론은 이에 대해 어떠한 답변을 제시해 줄 수 있을까? 광노완(2017b: 40~41)이 지적했듯이 마르크스는 도시지대에 대해 애덤 스미스의 농업차액지대를 그대로 적용하려는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⁹⁾ 그러나 1) 토지 소유권을 지하 및 공중으로까지 확장하며(Marx, 1894: 782), 2) 생산지대과 더불어 주택지대도 강조하고(Marx, 1894: 782), 3) 인구증가 및 산업용건물, 철도, 상가, 공장, 항구 등 도시고정자본의 발전을 가로채는 도시지대(Marx, 1894:782), 4) 지대의 자본화와 토지에 대한 자본주의적 투기의 연관성(Marx, 1894: 782~783)을 개념화함으로써 현대 플랫폼시대의 도시지대를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할 지평을 열어준다(광노완, 2017b: 앞의 곳).

현대의 도시공유지는 1) 공중처럼 인간노동의 생산물은 아니지만 용적률 등의 변화를 통해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막대한 지가상승을 가져다주는 공간, 2) 지하철/기차역 등 사회적으로 자금이 투자되고 생산된 인프라, 3) 도시거주자들의 공동노력으로 만들어진 도시문화와 분위기 등이 있다.

물론 이러한 도시공유지는 역설적으로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효과 등 간접적인 경로를 통해 부동산 부자들에게 막대한 이익을 가져다준다.¹⁰⁾ 그리하여 해

-
- 9) 도시지대에는 농업지대에서와 달리, 비옥한 토지의 공급 희소성이 잘 적용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도시지대는 대체로 상가나 건물, 주택처럼 건축물과 결합되어 있는데, 고밀도개발이나 새로운 도시개발로 도시지대를 낚는 공급물량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상가나 상업건물의 경우 자가소유지와 임차지로 양분되어 있으며, 주택의 경우 임차자인 거주자가 잉여가치를 낚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광노완이 지적하듯이 도시지대를 농업의 지대처럼 사회의 평균이윤에 추가되는 초과하는 이윤 내지 ‘허위의 사회적 가치’(Marx, 1894: 673)로 볼 경우 전반적으로 총상품가격이 총가치를 초과하게 되어 마르크스의 가치론이 무효화되는 문제점이 있다(광노완, 2017b: 59~60). 따라서 도시의 상업지대는 평균이윤의 초과부분이 아니라 평균이윤 내부에서 지불되는 것으로, 주택지대는 자본이 아니라 세입자를 직접적으로 수탈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광노완, 앞의 곳).
- 10) 광노완은 ‘공유지의 역설’이라는 개념을 통해 이러한 도시공유지 확대가 양극화를 증폭시키는 기제를 제시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정부의 예산으로 공유지가 건설되는 되는 경우, 토지용도상향, 환수된 개발이익을 통한 도시공유지의 확충, 세입자들의 경제활동을 통한 지역활성화 등이 ‘공유지의 역설’을 초래한 형태들이다(광노완, 2017b: 50~54).

당 부동산 부자들은 원하지 않을 때조차 막대한 차익을 얻는다. 곧 도시공유지의 양질이 풍부해질수록 자본가, 특권층, 부동산 부자들은 도시공유지를 더 많이 수탈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이 도시공유지는 사회 진보와 공진화한다. 이런 점에서 “소유자는 사회의 진보를 가로챈다”Marx, 1894: 781)는 마르크스의 지적은 적실하다.

특히 토지소유권을 공중으로 확장하여 고찰하는 마르크스의 분석들은 한국 도시개발이익의 인클로저를 분석하는 데 유력한 설명력을 갖는다. 한국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 재개발, 재건축, 정부주도의 도시재생/신도시/스마트시티 개발사업 등은 용적률 상향을 통해 개발이익을 확대시키는 대표적인 사업들이다.¹¹⁾ 왜냐하면 인구증가와 사회 진보로 용적률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고, 40~50년 전의 건물을 리모델링하거나 철거하고 새로 건축할 경우 상승된 용적률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심지어 각 단위의 정부는 추가로 현재의 상한 용적률을 일정 정도 더 상향해 주거나 토지용도상향을 통해 대폭 올려줄 수 있는 재량권을 갖고 있다. 여기에서 생기는 개발이익 중 초과이익에 대해 도시환경정비사업은 20%를, 재개발은 외부 분양물량의 20~30% 임대주택건설과 도로/공원/학교 부지를, 재건축은 초과이익의 50%까지를 정부에 환급해야 한다.¹²⁾ 그런데 여기서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첫째는 환수된 개발이익이 다시 해당지역 공유지개발로 투자되어 부동산 부자들의 개발이익을 더 크게 만들어준다는 2차적인 공유지 수탈이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둘째로 각급 정

11) 이민화·윤예지의 주장대로 신도시 정책과 스마트시티 정책은 서로 모순된다. 스마트시티는 신도시에서 기존 도시 중심으로 전략변경을 요청하기 때문이다. 곧 연결성이 뒷받침된 스마트시티는 규모가 증가할수록 가치가 증대하고 비용이 감소한다(이민화·윤예지, 2019: 120). 이는 다른 플랫폼과 마찬가지로 연결성이 증가할 때마다 네트워크효과가 급증하는 수확체증의 법칙이 작동하기 때문이다. 이는 스마트시티 전략을 통해 대도시의 고밀화가 더욱 가파르게 진행되면서 마르크스가 지적한 공중에 대한 소유권과 사회 진보 가로채기가 더욱 더 중요해질 것임을 예견하게 해준다. 따라서 스마트시티 사업을 공유가 아닌 사적인 플랫폼기업이 주도하면 도시가 사유화되는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금민, 2020: 143).

12) 이 외에 조합이익에 대한 법인세와 이익배당금에 대한 개인별 소득세도 정부로 환수된다.

부주도의 도시재생/신도시/스마트시티 사업은 사회성원 모두로부터 거둬들인 조세로 개발사업을 진행하여 특권층과 부동산부자들에게 막대한 개발이익을 안겨준다는 점이다. 특히 이 둘째의 경우는 현재의 문재인 정부와 박원순 전 서울시장 등 이른바 진보성향의 정부가 선호하는 사업으로, 정부가 국민을 조세로 수탈하여 자본/특권층/부동산부자들에게 조공을 바치는 플랫폼 역할을 하는 셈이다. 이는 다른 도시공유지 수탈에 달리, 추가로 국민의 조세를 수탈하기에 최악의 도시공유지 수탈이라고 할 수 있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을 포함하여 대다수 진보연구자들도 다른 도시개발은 적폐로 몰고, 문재인 정부와 박원순 전 시장의 공공개발사업을 지지하면서 아이러니한 입장을 택하고 있다. 공공성의 확대가 특권층의 이익 영유를 가져온다는 하비의 지적은 이런 점에서 예리하다고 할 수 있다(Harvey, 2012: 146). 특히 정부 주도의 플랫폼시티나 스마트 시티 개발사업은 용적률 상향 등 고밀도 개발 및 교통·통신 기반시설 건설과 기업규제완화로 참여기업과 지주들에게 막대한 이익을 가져다주는데, 이 대가로 사회성원들에게 공유되는 이익환수가 거의 없다면 플랫폼자본주의 시대에 가장 고도화된 도시공유지 인클로저에 불과하다. 이 플랫폼시티나 스마트 시티는 도시공중의 인클로저뿐만 아니라, 교통·통신 기반시설의 혜택을 플랫폼자본과 지주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함으로써 마르크스가 지적한 대로 “사회의 진보를 가로채는” 인클로저를 극대화하는 플랫폼이기 때문이다.

4. 나가며: 국내에서 플랫폼시티 개발이익의 공유화를 통한 기본소득 재원의 확충

마르크스는 “토지의 공동점유(Gemeinbesitz der Erde)”(Marx, 1867: 791)와 생산수단의 “사회적, 집단적인 소유(gesellschaftliches, kollektives Eigentum)”(Marx, 1867: 289)를 자본주의를 넘어선 대안경제의 점유 및 소유형태로 보았다.

이처럼 토지의 공유화와 생산수단의 집단적인 소유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할수록 이로부터 나오는 평등한 수익배당으로서 기본소득의 비중도 커질 것이다. 그런데, 토지 및 생산수단의 사회적인 공동 점유와 공동소유가 완전한 달성

되기 이전이라도 일부분의 공유화는 당장에라도 가능하다. 이미 한국사회에도 공공 토지와 공기업이 존재하고 있다. 이로부터 나오는 수익을 증대시키고, 공공 토지와 공기업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가 아니라 모두의 공동소유로 전환하여 그로부터 나오는 수익을 기본소득으로 평등하게 배당하면 되는 것이다.

그 외에 마르크스가 지적한 대로 새로 인공적으로 형성되는 도시공유지 수익이 있다. 즉 “사회의 진보를 가로채는” 다양한 형태의 도시개발이익이 그것이다. 특권층과 지주들이 사적으로 인클로저하여 온 도시개발이익 중 일부는 이미 국내에서 정부에 의해 환수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환수되는 개발이익이 다시 특권층과 지주들의 사유지 지가를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지출되거나, 아니면 사회성원들로부터 조세를 수탈한 돈으로 도시를 개발하여 그 이익을 자본과 지주들 및 특권층에게 갖다 바치는 게 지금의 현실이다. 도시개발이익을 사회성원들에게 평등하게 배당하는 기본소득으로 전환하는 것은 정당한 뿐만 아니라, 지금이라도 가능한 방안이다. 더욱이 플랫폼시티와 스마트도시 개발로 그 수익은 기본소득을 대폭 확대할 수 있는 규모에 달한다. 국내 주요 도시개발형태 및 이익환수제도와 환수가능액은 <표 1>과 같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용인플랫폼시티의 경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획으로 공기업을 통한 투자로 개발이익환수를 위한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었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환수될 개발이익이 도의 특권층에 의해 인클로저되지 않고, 도민 모두에게 돌아갈 기본소득으로 배당된다면 국내에서 최초로 도시개발이익을 기본소득으로 배당하는 사례가 될 것이다. 이는 마르크스의 방식대로 도시공유지 인클로저를 도시공유지배당 형태의 기본소득 전환하는 것에 가깝다.

먼저 주로 “사회진보의 성과를 가로채고” 더 나아가 정부를 통해 지주들에게 인클로저 될 가능성이 큰 것들을 보자. 플랫폼시티와 스마트시티의 개발이익의 기본소득으로 전환이 일반화된다면 상당히 의미 있는 기본소득의 재원이 될 것이다. 또한 문재인정부에서 추진 중인 도시공유지 인클로저의 대표 사례인 매년 10조 원의 도시재생예산을 향후 기본소득으로 전환하거나 도시재생에 따른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기본소득으로 전환하는 것도 중요한 기본소득의 재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3기 신도시 토지보상금으로 지출될 32.3566조 원의 예산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안을 적용할 수 있다. 이처럼 정부나 공공기관

<표 1> 주요 국내 도시개발이익 추정 및 환수방법

개발형태	공공투자금액	개발이익의 환수방법	현금환수액
재건축	미미함	- 재건축초과이익환수: 추진위 설립 후 초과이익의 최대 50% - 조합이익에 대한 법인세 - 이익배당금에 대한 소득세	- 재건축초과이익환수액은 2020년부터 매년 큰 폭으로 증가예정: 2020년엔 0.2533조 원 - 법인세와 이익배당금에 대한 소득세는 2020년에 수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나 분리 산정에 어려움
재개발	미미함	- 외부분양물량 중 공공임대주택 최대 30% - 조합이익에 대한 법인세 - 이익배당금에 대한 소득세	- 재개발초과이익환수는 없음. - 법인세와 이익배당에 대한 소득세는 2020년에 수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나 분리 산정에 어려움
도시환경정비	미미함	- 개발부담금: 사업시행인가 이후 초과이익의 20% - 조합이익에 대한 법인세 - 이익배당금에 대한 소득세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비해 1/5 이하 - 법인세와 이익배당금에 대한 소득세는 2020년에 수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나 분리 산정에 어려움
도시재생	매년 10조	- 없음	- 없음
신도시	2020~24년 토지보상금: 32.3566조	- 양도소득세(단, 10% 감면)	- 양도소득세. 토지보상금 대신 대토를 선택하거나 개인별로 보유기간 등의 차이 등으로 양도소득세 금액은 불확실
플랫폼시티/ 스마트시티	용인플랫폼시티: 5.96조 스마트시티: 0.1262조	- 용인플랫폼시티: 경기도 시공사 95%, 용인도시공사 5% 지분으로 개발이익 최대환수 예정 - 스마트시티: 환수계획 없음	- 플랫폼시티는 최대한 환수 스마트시티 개발이익 환수는 없음
추가토지세 0.55% 부과시		- 2017년 민간토지공시지가: 5,492조: 5,492조 × 0.0055	30.206조 원

을 통한 특권층의 도시공유지 인클로저를 기본소득으로 전환하기만 해도 매년 20조 원 내외가 확충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만큼 그동안 정부특권층의 도시공유지 인클로저가 심각했음을 보여준다.

나아가 공공투자금이 투입되는 공유지는 아니지만 도시공중을 인클로저하는 형태의 개발이익을 보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와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개발 부담금 환수도 중요하다. 이 환수액은 올해부터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현금부자인 수분양자에게 더블 로또가 되는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된다면 2~3년 후부터는 매년 환수액이 추가보유세 인상을 통한 재원을 능가할 수도 있다. 이 환수액은 45%가 광역지자체에, 55%가 기초지자체에 배분되어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재정비촉진특별회계,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되도록 되어 있다(재건축초과이익에 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¹³⁾ 곧 공공임대사업을 위한 재원이 될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를 제외하면, 다시 지주들에게 대가 없이 지가 상승을 안겨주는 ‘공유지의 역설’을 초래할 재원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주택자를 위한 국민주택사업을 제외한 다른 재원은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의 적용 대상을 아파트만이 아니라 보다 부유한 지주들이 소유하고 있는 상업용 건물 등으로까지 확대한다면 도시공유지수익의 배당액은 더욱 크게 증가할 것이다. 더 나아가 조합이익에 대한 법인세와 이익배당금에 대한 소득세 형태로 환수되는 개발이익은 도시개발이익 환수이지만 엉뚱하게 법인세와 소득세로 편성되어 공유자원으로부터의 수익이라는 점이 희미해진 상황이다. 따라서 도시개발사업에서 조합이익에 대한 법인세와 이익배당금은, 재건축초과 이익 환수 및 개발부담금과 함께 도시개발이익 공유기금으로 통합하여 기본소

1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 징수금의 배분 조항은 다음과 같다.

“제4조(징수금의 배분) ①제3조에 따라 징수된 재건축부담금은 국가에 100분의 50이, 해당 특별시·광역시·도에 100분의 20이, 해당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에 100분의 50이, 해당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100분의 30이 각각 귀속된다. <개정 2012.12.18., 2020.6.9.>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주택도시기금에 귀속되는 재원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운용하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또는 재정비촉진특별회계 또는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재원으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구에 각각 100분의 50을 지원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지원기준·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2.12.18., 2013.3.23., 2015.1.6., 2020.6.9.>”

득의 재원확충에 충당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렇게 공공투자금이 들어가는 유무에 따라 크게 두 가지 형태의 도시공유지 인클로저가 이루어지는데, 이를 모두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전환하면 추가토지세 인상액보다 클 수 있으며, 예산집행자인 정부 특권층의 저항은 있겠지만 국민들로부터는 많은 지지를 확보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사적으로 전유되어 온 개발이익을 공유하는 한 방안으로 토지세의 추가도입을 들 수 있다. 표에서의 예는 강남훈(2019: 169~170)에 따라 공시지가에 0.55%를 부과한 것이다. 상업용 토지나 고가 단독주택의 공시지가가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된 현실에서 단일세율은 토지세의 역진성을 크게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이다(곽노완, 2017a: 217~218). 그간의 사례에서 보듯이 조세저항이 과잉되게 나타날 수도 있으나, 국민 대다수의 조세부담을 증가시키지 않는 앞의 방안들과 더불어 실행되면 순수혜자의 범위가 크게 늘어나서 전 국민의 대다수가 순수혜자가 될 수 있을 것이기에 조세저항을 현명하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은 마르크스의 도시공유지 및 도시지대 개념을 오늘날의 국내 도시부동산 정책에 적용하여 그간 정부와 사적인 이익집단에 의한 도시공유지의 인클로저를 공유배당 형태의 기본소득으로 전환하는 방안이다. 이러한 도시공유지의 인클로저는 마르크스의 개념으로는 자본주의적인 수탈(Expropriation)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플랫폼시티 개발이익 배당은 오늘날의 플랫폼자본주의에서의 도시공유지 수탈을 기본소득으로 전환하는 방안이다. 이 외에 빅데이터 배당 등도 향후 유력한 공유지배당 모델의 기본소득을 확충하는 방안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마르크스적인 공유지(수익)배당 모델은, 마르크스주의 보수파 연구자들과 정치세력이 갖는 오해를 불식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곧 임금노동자의 것을 빼어서 노동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불로소득을 안겨준다는 오해를 넘어서고자 하는 기획이다.¹⁴⁾ 이들이 오해하듯이 기본소득이 임금노동자에 대

14) 마르크스주의 보수파 관점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또 다른 비판은, 기본소득이 사람

한 착취인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적인 공유지 수탈을 되찾아서 사회성원 모두가 평등하게 배당받는 몫이라는 마르크스주의 모델로 정당화될 수도 있다. 도시공유지배당은 그 중에 하나이지만 자본주의의 진행과정에서 그리고 코뮌주의로의 이행기와 그 이후에도 기술발전에 따라 인공적인 도시공유지의 몫으로서 점점 더 커질 것이다.¹⁵⁾ 그리고 그만큼 마르크스주의는 현실사회주의를 통해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고 현실사회에서 유력한 대안세력으로 부상하게 될 것이다.

(2020년 6월 28일 투고, 6월 29일 심사, 8월 18일 게재 확정)

들로 하여금 자본주의적인 소유관계를 내버려둔 채 국가로부터 지급되는 평등하지만 미미한 생계비로 만족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이리하여 기본소득은 임금노예제를 공고히 한다는 것이다(Roth, 2018: 181~185). 이 비판은 기본소득이 사회주의나 코뮌주의에서는 없어지고 자본주의의 보완물에 불과할 뿐이라는 견해에 기초한 것으로, 토지와 생산수단 그리고 빅데이터 등 모두의 공유지가 늘어날 코뮌주의 사회에서는 기본소득도 자본주의에서보다 더욱 증가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놓치고 있다.

- 15) 물론 마르크스의 코뮌주의 고차국면은 희소성을 넘어선 풍요로움(abundance)의 사회이다(Frase, 2016). 그러나 누구나 원하는 무엇이든 향유할 수 있는 그런 무한정의 유토피아는 3D 프린터가 넘쳐나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도 상상할 수 없다. 코뮌주의에서는 공유지의 비중이 커지면서 기본소득도 경제발전 이상으로 증가하겠지만, 총경제규모 이상으로 커진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더욱이 경제규모를 지속적으로 축소시키는 정도로 커지는 것도 불가능하다. 곧 하밍가(Hamminga)가 주장하듯이 경제규모를 지속적으로 축소시키지 않는 한에서 기본소득은 경제발전 이상으로 증가하게 될 것이다(Hamminga, 1995; Füllsack, 2002: 147~148에서 재인용). 마르크스의 코뮌주의 고차국면의 풍요로움은 이처럼 희소성의 한계 내에서의 상대적인 풍요로움일 수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금민은 코뮌주의 고차국면에서 욕구(Bedürfnisse)를 충족할 풍요로움의 상대적 한계를 놓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금민, 2020: 386~387). 마르크스 코뮌주의 고차국면에서의 욕구에 따른 분배원리는 풍요의 경제를 전제한다는 그의 주장(앞의 곳)은, 희소성의 경제에서는 욕구에 따른 분배가 전혀 불가능하다는 뜻으로 읽힌다.

□ 참고문헌

- 강남훈. 2019. 『기본소득의 경제학』. 박종철출판사.
- _____. 2017a. 『스마트공유도시와 도시기본소득의 비전』. 《인문사회 21》 제8권 제4호.
- _____. 2017b. 『마르크스 지대론의 확장 and 현대 도시지대론을 위한 시론』. 《마르크스주의 연구》 제14권 제3호.
- _____. 2017d. 『사회주의와 기본소득: 로머의 사회배당 및 하워드의 기본소득 개념의 재구성』. 《마르크스주의 연구》 제14권 제3호.
- _____. 2020. 『플랫폼 자본주의 시대의 프레카리아트와 기본소득의 확대』. 《마르크스주의 연구》 제17권 제1호.
- 김공희. 2006. 『데이비드 하비의 제국주의론 비판』. 《마르크스주의 연구》, 제3권 제1호.
- 금민. 2020. 『모두의 몫을 모두에게』. 동아시아.
- 이민화·윤예지. 2019. 『자기조직화하는 스마트시티 4.0』. KCERN.
- 스미스, 애덤. 1998. 『국부론』. 김수행 옮김. 두산동아.
- 최철웅. 2017. 『플랫폼 자본주의의 정치경제학』. 《문화과학》 제92호.
- 하비, 데이비드. 2005. 『신제국주의』. 최병두 옮김. 한울.
- _____. 2014. 『반란의 도시』. 한상연 옮김. 에이도스.
- Engels, F. 1872. “Zur Wohnungsfrage.” MEW 18. 1981. Dietz
- Frase, P. 2016. *Four Futures: Visions of the World After Capitalism*. Verso.
- Füllsack, M. 2002. *Leben ohne zu arbeiten?* Avinus.
- Howard, M. 2005. “Liberal and Marxist Justifications for Basic Income.” G. Standing(ed.). *Promoting Income Security*. Anthem Press.
- Marx, K. 1861-3. *Theorien über den Mehrwert*. MEGA III.3.4. 1979. Dietz.
- _____. 1867(1890). *Das Kapital*. Bd1(4. Aufl). MEW 23. 1962. Dietz.
- _____. 1894. *Das Kapital*. Bd3. MEW 25. 1975. Dietz.
- Reiners, J. 2019. “Das Frankfurter Manifest - Rückgewinnung des Utopischen für die Linke.” W. Rätz et al(eds.). *Digitalisierung? Grundeinkommen!*. mandelbaum.
- Roth, R. 2018. “Das bedingungslose Grundeinkommen als Menschenrecht und Alternativer zur Lohnarbeit?” Ch. Butterwegge and K. Rinke(eds.). *Grundeinkommen kontrovers*. Beltz Juventa.

□ 영문초록

The Urban Commons in the Age of Platform Capitalism and Basic Income

No-Wan Kwack & Jeong-Im Kwon

While theorizing capitalism in *Capital*, Marx shows double sides with exploitation and expropriation¹, while focusing on exploitation. As an alternative system, communism is described as an association of all members of society, including non-workers, and sometimes as an association of laborers. The concept of exploitation and the resulting labor-fetishism from this ambivalence have been privileged in real socialist countries. And among the ambivalence about commonization and nationalization that appeared in Marx, the latter was privileged in real socialist countries. This article reconstructs Marx's concept of the enclosure of the commons and urban rent. This reconstruction enables us to analyze the city evolving into a platform of today's capitalism. An alternative is the commonization of profits from urban development. It presents a plan to increase basic income being shared. In particular, platform or smart city dividends are a way to transform the expropriation of urban commons into a basic income.

Keywords: platform city, smart city, urban Commons, urban rent, expropriation, basic income.